

부산직할시남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증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사회산업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. 9. 5일 남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 일자 : 1992. 9. 9일 회부
- 다. 상정 일자 : 제15회 남구의회(임시회)
제1차 사회산업위원회(1992. 9. 22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정현모)

가. 제안 이유

- 0. 도시계획법 제87조 개정(법률 제4227호, 91.12.14)으로 농지 지역안의 농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함.
- 0. 시농정 27210-1478(92.8.1)농지원부 작성 관리 및 농지매매 증명 발급 업무를 동장에 위임토록 사무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칙에 의거 제정

나. 주요 골자

농지매매 증명 발급 및 농지원부 작성 관리를 구청장에서 동장에게 위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이무상)

- 0. 지금까지는 농지원부 작성 관리를 구청장이 일괄 작성 관리 운영토록 하였으나, 시준칙에 의거 금번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동장이 작성 관리하여야 할 것임.

0. 또한 '91.12.14일 도시계획법 제87조가 개정됨에 따라 농지 지역안의 농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매매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해 오던중 금년 8월 1일 농지원부작성 및 농지매매 증명 발급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토록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칙이 부산시에서 시달되어 본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것임.'

0.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,

농지지역안의 농지매매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한 것은 정부의 주요 현안 사항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하나로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치 않도록 하여 우리 조상이 물려준 실제 경작할 수 있는 농지를 이땅에 영구히 효율적으로 보존토록하며 또한 '89.8.3일부터 지금까지 농지 원부를 구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동장 책임하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볼때 금번 본 조례 개정안에 의거 농지매매증명 업무와 농지원부 작성 관리를 등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자	답변자	질의요지	답변요지
이인곤 위원	지역경제과장 정현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남구의 농지가 3,448필지 32만여평인데, 현재 농사를 안짓는 땅은 어느정도인지 설명 요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32만5,250평이 토지대장 상 지목이 농지이며 전체 농지중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80.87%가 됨.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사를 안짓는 부분도 지목 상 농지라면 전체를 농지로 보는지 설명 요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단 농지로 보나, 농지 원부 작성은 안되겠음.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사를 안짓는 땅은, 농민이 아닌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설명 요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대지는 관계가 없으나, 자연녹지에 한해서만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.

김한민 위원	지역경제과장 정현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용당동에 전답이 1000평이 있다고 하면 농지관리는 용당동에서 관리하는지 설명 요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재는 구청에서 관리 하나 본조례가 의결되면 농지소재지인 용당동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임.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작으로 인정하는 것 같으면 몇km²로 하는지 제한은 없는지 설명 요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지원부에 당초 작성 대상을 1000m²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해당되며, 통착거리는 20km이내에 있으면 농민으로봐서 농지원부작성이 가능함.
정경화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지원부 업무가 구에서 동사무소로 이관되면, 동의 업무가 더욱 가중해지는데 구에서 직원을 동사무소에 발령을 해주는지, 아니면 동자체에서 별도로 중원은 있는지 설명 요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남구의 경우 10농가만 있고 이 업무가 동으로 이관되어도 업무처리가 복잡하지 아니하므로 직원의 증원은 어려운 실정임.
김한민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답은 농민이어야만 살 수 있는지 설명 요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, 농민이어야만 농지매매가 가능하며 그것을 관내의 등장이 가장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임.

박병화 위원	지역경제과장 정 현 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은 주민들에게 어떤 편리한 점이 있는지 설명 요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정을 하면 엄청난 편리한 점이 있음. (동사무소에서 2명의 확인을 받아 바로 발급이 가능함) 농지동에서는 농지원부와 농지카드를 주민등록카드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고해서 일목요연하게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음.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매의 허가는 어디서 하는지 설명 요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건 허가가 아니고 매매 증명만 발급받아 등기소에 가면 등기가 이루어짐

5. 토론 요지 : 없 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